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2년 3호
SEP 30 2022

발간년월 2022년 9월 30일(2022년 3호)

발행인 김종덕 총괄 윤인주 감수 홍성걸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처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TEL +82-51-797-4790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Editor's Note

02

남북해상접경의 위기관리 필요성

윤인주(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연구위원)

기획 칼럼

03

남북접경해역의 북한 주민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

한명섭(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분단국 접경지역의 재난협력 사례와 시사점

류상일(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해양도시

16

북한도시 함흥-흥남의 기원과 형성

위영금(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지상중계

21

2022 부산 평화공감 학술회의

진서현(KMI 현장실습생,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北 리뷰

39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정대진(한라대학교 교수)

북한 알기

43

북한에도 도선사가 있나요?

채수란(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전문연구원)

北 소식

47

북한 해양·수산 기사 (2022년 7월~9월)

NK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2022년 7월~9월)

진희권(부산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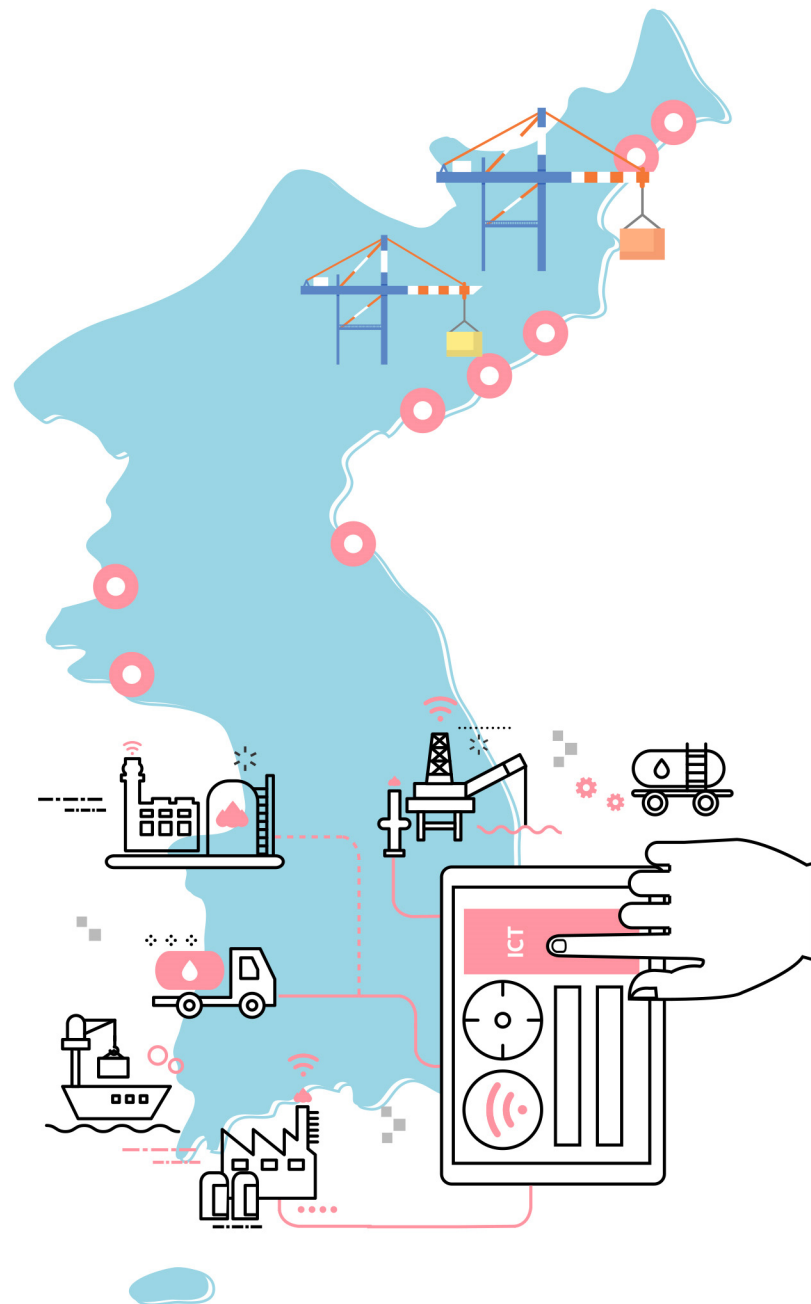
북한 통계

65

수산물 가격 정보, 품목별 가격 추이

북한 주민 식생활 관련 수산물 공급·수요 동향

이상용(데일리NK 공동대표)



Editor's Note

남북해상접경의 위기관리 필요성

윤 인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남북해상접경에서 발생한 일들이 최근에 이슈가 된 바 있다. 2019년 동해 북한 어민 북송,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2022년 한강하구 아동 시신 표류 등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번 호는 이러한 현안을 반영하여 남북해상접경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한다. 남북접경해역에서 일어나는 북한 주민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분단국 접경지역의 재난협력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는 방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두 전문가 모두 법과 방재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북한 학 학위를 다시 취득할 정도로 남북관계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기에 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된다.

이번호 ‘지상중계’는 ‘2022 부산 평화공감 학술회의’에서 지역협력을 다룬 1세션과 생태계 협력을 다룬 3세션을 요약하여 전한다. 접경생태계 협력은 남북해상접경의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北 리뷰’로 선정된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책에도 북한 주민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번호에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가 있다. 우선, ‘해양도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생겼다. 북한의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를 소개하는 글이 연재로 실릴 것이다. ‘북한 알기’에서는 북한의 바다와 관련된 현황을 소개하는 주제가 연재될 것이다. 북한 내부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제공하는 ‘북한 통계’에서는 주민 식생활과 관련하여 수산물의 공급·수요 동향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번호도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되었다. 기획안을 검토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편집위원을 비롯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북한해양수산물리뷰를 찾아 읽어주시는 독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기획 칼럼

남북접경해역의 북한 주민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

한 명 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1953년 정전협정에서는 육상에만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8월 30일 일방적으로 공산군 병력의 남하 차단과 유엔군 및 국군 병력과 한국 어민의 북한 월경을 방지하기 위한 북방한계선(이하, NLL)을 설정하였다. 남북접경해역 중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NL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 관련 사건을 유형화해 보면 그 목적이나 경위에 따라 ① 남북교류협력 목적인 경우, ② 간첩행위가 목적인 경우, ③ 불법조업이 목적인 경우, ④ 북한이 탈주민인 경우, ⑤ 조난자인 경우, ⑥ 변사체의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가 분단국이라는 남북한 간의 특수한 법적 지위 또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위 유형별 적용 법리를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선원 강제 복송 사건과 관련된 법적 논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남북한의 법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통상 한 국가의 법체계는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성되고, 대부분 그 체제 하에서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남북한은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안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한다.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제3조에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서문과 같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

기획 칼럼

한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의 내용은 적극적 정의가 아니다. “형성된”이 아니라 “형성되는”이라고 표현한 것도 남북관계가 유동적임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분단국의 관계이다. 분단국의 특성은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의 의미는 국제사회에서는 별개 국가이지만 상호 간에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자 교류협력의 상대방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러다 보니 남북한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경우에 국제법이 (유추) 적용 또는 준용되고, 어떤 경우에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국내법 적용 영역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반국가단체로 보고 어떤 경우에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단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이데올로기 산물로 탄생한 예외적인 국가형태이다. 북한은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분단국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론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유형별 적용 법리 검토

1) 남북교류협력이 목적인 경우

남측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이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북한 당국과 남한 당국의 허가나 승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NLL을 넘어온 경우라면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남북합의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관련 남북합의서로는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등이 있다. 정부는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전면 불허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조치만으로 ‘남북해운합의서’ 자체가 파기되거나 전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2) 간첩행위가 목적인 경우

북한 주민이 간첩행위 등 불법을 목적으로 몰래 넘어온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6조 소정의 잠입죄로 처벌하면 된다.

기획 칼럼

3) 불법조업이 목적인 경우

북한 주민이 어로 행위를 목적으로 고의로 NLL을 침범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은 따로 없다. ‘남북해운합의서’ 제6항에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어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과 제8항에 근거하여 검색이나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해운합의서’ 제1조(정의) 제1호에서는 동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어선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선을 이용한 어로 목적의 월선이라면 위 합의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발견 장소가 배타적 경제수역일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외국인”의 어업활동에만 적용된다.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위 법률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경고 등을 통해 북측 해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해당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5) 조난자인 경우

남측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이 조난자인 경우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체결한 남북합의서나 국내법은 없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7조 제1항에서 선박의 충돌, 좌초 등의 해양 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때의 인명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난자가 위 규정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 합의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98조에서는 모든 국가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선박·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제관습법을 조문화한 것이어서 동 협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의 선장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조난자인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구조 조치를 하고 교류협력의 상대방 지위에 있는 북한으로 되돌려

기획 칼럼

보내면 될 것이고, 그동안 그와 같이 조치해 왔다. 만일 이때에도 해당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6) 변사체의 경우

홍수 등으로 인해 종종 북한 주민 또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남측 해역에서 발견될 때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에 별도로 체결한 합의서는 없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임이 확인되면 북한과의 협조하에 북한으로 보낸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시장 등이 가매장하고 ‘변사체 행정처리 공고’를 하게 된다.

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20년 9월 21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지 않고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국적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도 북한 공민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아도 자국민인 조난자를 사살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상 조난자에 대한 구호 조치 의무는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이다. 1980년 제정한 북한 ‘해운법’ 제73조(선장의구조의무)도 “배의 선장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과 배를 발견하였거나 조난신호를 받았을 경우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월 새로 제정한 것으로 알려진 ‘해상탐색 및 구조법’ 제47조와 제48조에서도 선장의 조난자에 대한 구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5. 북한 선원 강제 복송 사건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 두 명이 우리 군에 나포되었다. 이들은 조사받은 지 3일 만에 강제 복송이 결정되고, 5일 만에 판문점을

기획 칼럼

통해 강제 송환되었다. 강제 복송 이유에 대해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으며, 남한 내에서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처벌 하기도 어려워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규정을 적용하여 보냈다는 것이다. 강제 복송 과정의 절차는 물론이고 실체법 상으로도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조치였다. 법적인 관점에서 대표적 문제점만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를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이하, 보호신청의사) 여부와 연계해서 보는 견해들이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는 위 법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법률은 ‘국적법’이다. 우리 ‘국적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 어디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호신청의사는 국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둘째, 당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그 대상을 “외국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귀순(보호신청) 의사의 진정성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요건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강제 복송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위 법률에 따른 보호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불과하며,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고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적지 않다.

다섯째, 자백 외에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도 강제복송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당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만일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법적 정의에 맞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도 범죄인인도 관련 합의서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북한이 국내 체류 북한이탈

기획 칼럼

주민에 대해 범죄인인도 요청을 할 경우를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한의 범죄자나 탈북자에 대한 처우와 처벌 수준을 고려할 때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6. 맺음말

남측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여러 유형 중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적용 대상은 비교적 명확하게 분류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처리할 문제는 아니므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불법어로의 경우나 변사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한 간에 관련 합의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해운합의서’도 남북한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협력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선원 강제 복송 사건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강제 복송 3시간 전 법무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한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제 복송 조치를 한 것은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체계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경위를 떠나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한 정확한 법 해석과 처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기획 칼럼

분단국 접경지역의 재난협력 사례와 시사점

류 상 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1. 도입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는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금강산 관광(1998년 11월-2008년 7월),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개성공단(2004년 12월-2016년 2월), 10.4 남북정상선언(2007년), 4.27 판문점선언(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2018년) 등으로 화해와 단절이 그동안 반복되어왔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 범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과거 남북관계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북 재난 대응 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산·지진·질병 등이 한반도 내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남북 간 협력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남북한 재난협력체계 구축은 남북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통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접경지역에 대한 논의

국가 간에 접경지역은 산과 강 그리고, 공유하천으로 대개 구분된다. 접경지역 공유하천 이용과 관련하여, 절대적 영토주권주의(하문주의)와 영토보전주의(연안우선주의) 그리고, 제한적 영역주권주의(상호개발이론)로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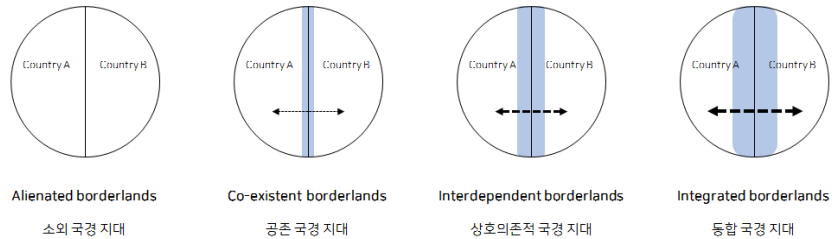
기획 칼럼

이 변화되어왔다. 우선, ‘하문주의’는 자국 영역 내 하천수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하류국은 상류국의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서 주로 상류국의 논리로 사용되었던 이론이다.¹⁾ 반면, ‘연안 우선주의’는 하문주의와 대치되는 이론으로서 하류 지역은 상류 지역으로부터 흘러오는 일정한 양의 물을 방해받지 않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구(舊) 영미법상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주로 하류국의 논리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호개발이론’은 각국은 자국 영역을 통과하는 하천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타국의 영역이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조약이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접경국이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다.²⁾

Loesch는 국경 분리에 따른 상품의 유통이 경계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국과 멕시코의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입증하였고,³⁾ 국경의 접근성에 따라 상품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공급자의 입지적 이점이 제공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⁴⁾ 즉, Loesch는 지역 간 경계가 상호 간에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반면, Kratke는 독일과 폴란드의 접경지역 지역 경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접경지역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⁵⁾ 접경지역의 통합을 위해서는 저차원적 협력과 고차원적 협력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외에 접경지역의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인 행위자에 대한 관점을 가진 것이 Lezzi의 모델이다. 즉, 접경지역에서 각자의 독자적 정책은 상황에 따라 상호 모순적일 수 있으며, 또한 상호 경쟁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⁶⁾

한편, Martinez의 접경이론은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의 사례 연구에 기반하여 모형을 도출하였다. 현시대에서는 국가 간 상호 작용과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국경의 장벽 기능은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접경지역을 4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획 칼럼

[그림 1] Martinez 접경지역 이론⁷⁾

Martinez는 국경지대를 크게 소외국경지대, 공존국경지대, 상호의존적 국경지대, 통합국경지대 등 네 유형으로 구별했다. 첫째, ‘소외국경지역’에서 경계는 기능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월경적 상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공존국경지역’에서 경계는 때에 따라 상호 협력 개발을 위해 제한적으로 개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상호의존적 국경지역’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넷째, ‘통합국경지역’에서는 양국 간의 정치적 경계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국경을 통과하는 인적·물적 교류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⁸⁾ ‘통합국경지역’은 Martinez가 유형화한 국경 지역 중 가장 발달한 최종적 형태로서, 무역 및 사회 장벽이 거의 사라지면서, 인구·상품·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국경 지역이다.⁹⁾

3. 분단국 접경지역의 재난협력 사례¹⁰⁾

Martinez의 접경지역이론 관점에서 과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 재난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의 경우 접경위원회 이전 시기(1952~1972년)는 소외국경지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소외국경지역’에서 경계는 기능적으로 폐쇄되며 월경적 상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¹¹⁾ 이처럼, 동서독의 경우는 1952년 접경지역이 폐쇄된 때부터 1972년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시기가 ‘소외국경지역’ 시기에 해당한다.¹²⁾ ‘소외국경지역’ 시기의 동독과 서독의 접경선은 서로 간에 방어적이면서도 갈등적이었다. 1952년 동독은 양 독일 간에 이용하던 통로를 폐쇄하였고, 이에 따라 동독에서 서독지역으로 향하는 자유로운 통로가 차단되었다. ‘철의 장막’으로 알려진 동서독 접경지역은 동독 정권에 의해 무려

기획 칼럼

30여 년 동안 삼엄하게 무장과 감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급증하는 주민의 서독행을 막고자 1961년 1,393km에 이르는 모든 접경지대에 철책선, 감시탑, 참호, 지뢰, 자동소총 등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하였으며, 그 결과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 국경은 “죽음의 지대”로 불렸으며 무려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¹³⁾

둘째, 동서독 접경위원회 초기(1972-1978년)는 공존국경시대 시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존국경지역’시기에서 경계는 때에 따라 상호 개발을 위해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이 시기에는 접경지역이 공존함에 따라 지역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증대되면서 표면적이거나 갈등이 사라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공존국경지역’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협력—즉, 정서적 장벽, 불규칙한 지위, 국경의 진로—를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이 시기, 서독 정부의 ‘신동방정책’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동서독은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화해협력단계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동서독 「기본조약」이 실행되면서 20년 동안 ‘소외국경지대’였던 동서독 국경지역은 서서히 ‘공존국경지대’로 변화하였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1972년 「기본조약」 제3조의 부속의정서 제1항을 바탕으로 「접경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동서독 접경지역 재난 관련 협력은 「재해보호 및 손상방제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서독은 접경지역에서의 재난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면서, 합의를 통해 접경지대 재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재해보호 및 손상방제를 위한 합의」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재난 유형으로는 “접경지역 화재(제2조a목), 홍수·빙해·하수범람 등(동조b목), 폭풍 등(동조c목), 동물 질병을 포함한 전염성 질병(동조d목), 산림·목초 등의 병해충(동조e목), 유류 및 기타유해물질 오염(동조f목), 대기오염 등(g목), 폭발사고(h목), 교통사고(i목), 방사선위험(j목)” 등인데, 양 국가는 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해보호 및 손상방제를 위한 합의」에서는 일반적 재난 상황에 관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하였다. 개별 분야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합

기획 칼럼

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즉, 기존 「기본조약」(1972), 「상호교통조약」(1972) 및 「재난공동대응협정」(1973) 등에 기반하여, 이후에 「보건의료합의서」(1974), 「수익분야합의서」(1979), 「환경협정」(1987) 등의 개별 분야 합의서가 차례대로 체결됨으로써 재난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¹⁴⁾

셋째, 동서독 접경위원회 활성화 시기(1978-88년)는 ‘상호의존적 국경지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상호의존적 국경지대’는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접경지역을 가리키며, 이 ‘접경지대’에서는 지역 간 협력이 발전되고 개인·상품 및 자본의 이동이 활발히 일어난다. 이 시기에는 재난에 대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홍수·화재·산사태·전염병·병충해·환경오염 등 각종 재난에 대해서 서로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¹⁵⁾ 동서독 접경지대가 점진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지대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호의존적 국경기’의 대표적 활동은 독일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뤼벡만 접경선에 대한 접경위원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양경계선이 확정되었으며, 상호 어업권에 대한 합의를 통해 자유로운 어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⁶⁾

넷째, 독일통일 이후 시기(1989년부터)는 ‘통합국경지대’ 시기이다. ‘통합국경지대’는 Martinez가 표시한 국경 지역의 최종 유형이다. 이 지대의 특징은 무역과 사회관계 장벽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통합된 접경지대에서는 인구,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집중적이고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접경지대에서는 양국 간의 정치적 경계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국경을 통과하는 인적·물적 교류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¹⁷⁾ ‘통합국경지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동서독 접경위원회의 역할은 컸다. 접경위원회는 접경선의 구획뿐만 아니라 접경선에 위치한 수자원을 포함한 각종 자원을 상호이익이 되도록 활용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해서 서로 공동협력을 통해 대처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주민을 포함하여 양 독일 정부 등 여러 관련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¹⁸⁾ 특히 통일 후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구 접경지역의 생태자원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어 지역발전 협력의 장이 되었고, 유럽 그린벨트로 확대 발전되었다.¹⁹⁾

기획 칼럼

4. 한반도에의 시사점

한반도 접경지대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오면서 교류와 단절을 병행해 오고 있다. 즉, 8·15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국경이 개방되었던 ‘공존국경지대’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소외국경지대’로 오랫동안 존재했다. 이후 1998년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서서히 ‘공존국경지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접경지대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연속적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으로 인해 2016년에 개성공단이 완전히 닫히면서 다시금 ‘소외국경지대’로 후퇴하였다.

[그림 2] 독일과 한반도의 국경지대 변화과정 비교²⁰⁾

독 일	소외 접경지대	⇒	공존 접경지대	⇒	상호의존적 접경지대	⇒	통합 접경지대
	접경위원회 이전 (1952-72)		접경위원회 시작기 (1972-78)		접경위원회 활성화 시기 (1978-88)		통일 이후 (1989년 부터)
한 반 도	공존 접경지대	⇒	소외 접경지대	⇒	준(準)공존 접경지대	⇒	소외 접경지대
	8.15해방 직후 ~ 한국전쟁 직전 (1945-50)		한국전쟁 발발 ~ 금강산관광 이전 (1950-98)		금강산관광 시작 ~ 개성공단 폐쇄 (1998-2016)		개성공단 폐쇄 ~ 현재 (2016-현재)

남북한 접경지대에서의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남북한 사이의 정치·군사적 이유도 있지만, 소극적인 북한의 태도도 큰 걸림돌이다. 그나마 ‘준(準)공존국경기’에서조차 남북한 사이의 재난 안전 협력이 제도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도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재난 안전 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협조시스템 측면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접경지대나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단지구와 같이 남북협력지대에서 우선적인 재난협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남북협력지대에서의 재난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난 다음, 단계적으로 재난협력지역을 넓

기획 칼럼

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처럼,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재난협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잠시 멈춰 서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능적 관점에서 재난안전 분야에서라도 남북한 재난안전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1) 윤혜정. 2002. 「임진강유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5-7.
- 2) 김영봉. 2006.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국토연구」, 48: 37-54.
- 3) Boesler, K. A. 1983. *Politische Geographie*. Westermann.
- 4) 김상빈·이원호·이현주·박삼옥. 2003. “접경지역연구의 이론적 고찰,”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24.
- 5) Kraetke, S. 1998. “Problems of Cross-border Regional Integration-The Case of the German-Polish Border Area,” *Regional Studies*, 33(7), 631-641.
- 6) Lezzi, M. 1994. “Competition-cooperation: a creative interplay of border regions in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and in transborder institutions”. In *Political boundaries and coexistence*. Proceedings of the IGU-Symposium Basle/Switzerland (pp. 322-332). Berna: Peter Lang.
- 7) Oscar J. Martinez. 1994. “New Approaches to Border Analysis,” *Global Boundaries*, ed., Clive H. Schofield, London: Routledge, 1-15.
- 8) 김부성. 2006. “스위스, 독일, 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 상호작용,” 「대한지리학회지」, 41(1)
- 9) Czarczyńska A. and Śledzińska K. 2003. *Teoria integracji europejskiej*, Wydawnictwo C.H. Beck, Warszawa; Wróblewski Ł. 2013. “New approach towards research in cross-border region, Facul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Poznan University of Economics*; 9) 박정원·오형근. 2017. “남북한의 재난·재해법제 비교 분석,” 「법학논총」, 30(2): 218; 9) 박훈민. 2016. 「분단국가의 재난대비 실무협력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1-22.
- 10) 류상일. 임재천. 2022. “남북한 접경지역과 재난협력 연구,” 「Crisisonomy」. 18(3). pp. 34-44.
- 11) 김부성. 2006. “스위스, 독일, 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 상호작용,” 「대한지리학회지」, 41(1): 22-38.
- 12) 손기웅. 2014.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추진방안: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연구 14-0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13) 박은진·심숙경·이상대·최용환·황금희. 2012.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이슈 & 진단」, (44): 1-25.
- 14) 박훈민. 2020. “남북한의 재난대비 분야 행정협력의 가능성과 그 공법상의 문제에 대한 소고-비교법적 검토와 법제화 방안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61): 29-56.
- 15) 이상준. 2016. “동서독 도시교류의 경험과 시사점,” 「6.15 16주년 기념식」.
- 16) 손기웅. 2014.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추진방안: 동서독 ‘접경위원회’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연구 14-0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pp. 24-30.
- 17) Oscar J. Martinez. 1994. “New Approaches to Border Analysis,” *Global Boundaries*, ed., Clive H. Schofield, London: Routledge, 1-15.
- 18) 손기웅. 2006.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19) 박은진·심숙경·이상대·최용환·황금희. 2012.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이슈 & 진단」, (44): 1-25.
- 20) 류상일. 임재천. 2022. “남북한 접경지역과 재난협력 연구,” 「Crisisonomy」. 18(3). p. 43.

해양도시

북한도시 함흥-흥남의 기원과 형성

위 영 금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 화학 산업의 출발점, 흥남의 기원

흥남은 행정구역상 함흥에 속해있으며 지리적으로 함흥에서 12km 떨어져 있다. 예로부터 명태와 청어를 비롯해 맛 좋은 생선이 많이 나오는 기름진 어장이다. 흥남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화학기술자 노구치이다. 노구치는 도쿄제국대학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1922년 암모니아 합성법에 의한 황산암모니움(카살레법) 특허권을 구매하여 노베오카(1923년), 흥남(1927), 지금의 명천(영안 1931), 은덕(아오지, 1935년), 청수(1941)에 공장을 건설했다.

1918년 식량난으로 비료 가격이 폭등하여 호황을 누렸으나 1920년대부터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노구치는 식민조선의 공간에 눈길을 돌렸다. 질소비료 생산에는 전기가 필요하다. 동해에 위치한 흥남이라는 작은 어촌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낭림산줄기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풍부한 강수량과 산업용수가 있어 흥남은 화학산업도시로 적합한 지리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본과 근접해 있고 대륙으로 진출할 때 필요한 항구와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926년 노구치는 단독 투자로 조선수전(朝鮮水電(株))을 설립하고 부전강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 일본 본토에 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규모는 조선 전체 전기사용량의 4배, 발전량의 8배가 되었다.

1927년 당시 면적이 54km²로 36개의 동리(洞里)로 이뤄진 운전면에 질소 비료공장이 세워지면서 행정구역상 흥남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1930년 면(面)으로 승격되고 1931년 10월 읍(邑)이 되고 1944년 12월 부(府)가 되었다. 초대 읍장은 흥남을 만든 투자자인 노구치가 되었다. 흥남의 주인 노구치는 주재소가 경찰소로 확장되고 개편되는 데 관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경제 모든 부분을 통제했다. 흥남의 ‘공급소’에서는 각종 공업상품을

해양도시

판매하는데 노동의 대가로 전표를 판매했다. 흥남은 ‘자본가가 출생과 사망신고를 받고 경찰이 임금협상에서 기업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기업도시가 되었다.

화학은 합성기술에 따라 배설물을 받아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다. 질소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암모니아를 황산암모늄으로 바꾸면 비료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폭약과 화약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화학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노구치 기업은 호황을 맞았다.

1927년 질소비료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1935년에는 흥남의 서쪽으로 공장을 지었고 1937년에는 군수공업으로 전환되면서 함흥의 중간지점까지 확장했다. 식민정부는 토지매입으로부터 전쟁물자 생산에 이르기까지 독점 재벌을 지원했다. 공장관리와 기술은 주로 일본인이 맡았다. 많은 일본인이 흥남으로 이주했고 공장 사원이 되었다. 공장건설과 함께 사택도 건설했으나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구분되었고 조선인 마을은 점점 잠식되었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과 열악한 환경으로 흥남에서는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이북명과 한설야 등 카프 문학가들과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운동거점이 되었다.

2. 화학 산업의 중심, 함흥의 형성

해방 후 소련은 흥남의 화학산업시설에도 관심을 가졌고 평양보다 함흥으로 먼저 들어와 시설을 인계받았다. 소련 군정이 당시 상황에 따라 일본인에게 당분간 행정을 유지하도록 하자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소련 군정은 헌병과 경찰을 무장해제하고 관공서를 함남인 민위원회에 인수하여 넘김으로써 국내 조직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과 국내 공산주의자 오기섭과의 노선 갈등으로 함흥은 ‘지방주의 온상’을 표상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에서 화학 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은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소련의 분업을 반대하고 자립적 경제를 주장한 김일성에게 비날론의 성공은 정치적 입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김일성은 화학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카바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석회석이 무진

해양도시

장으로 있고 무연탄과 전력도 풍부하게 있다. 수력 자원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무연탄을 가스화하면 연료와 동력도 문제없다. 카바이드에서 섬유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비날론 공장, 염화비닐공장을 건설한다면 질 좋고 다양한 화학섬유를 훨씬 많이 얻게 될 것이다. 화학화의 길로 나간다면 합성고무도 생산할 수 있다. 고무는 어디서 안 쓰는 데 없다. 트랙또르나 자동차를 굴리려 해도 고무가 요구되고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을 만들려고 해도 고무가 요구된다.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결정적으로 화학화의 방향에서 출로를 찾아야 한다.”라며 화학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화학 기술은 자국에 풍부한 원료와 연료로 자립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패망과 함께 일제가 남기고 간 흥남의 산업시설에 공장을 가동할 기술자가 부족했다. 북한은 부족한 기술 인력을 위해 남한학자의 월북을 유도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일본 기술자들을 그대로 채용하면서 기술 우대 정책을 펼쳤다.

리승기 박사는 1905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 1921년 서울에서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미츠야마 고등학교를 거쳐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남북을 통틀어 해방공간에서 합성섬유분야의 가장 명망 높은 과학자였다. 김일성은 그를 영입하고자 공을 들였다. 결국 1950년 7월 31일 리승기 박사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월북을 선택했다.

화학기술자였던 리승기 박사는 PVA(폴리비닐알콜) 기술을 개발하면서 북한의 유기화학을 발전시켰다. 월북 기술자 중심으로 북한 최초의 화학공업대학이 세워지고 흥남비료공장에 첫 과학연구기관인 ‘흥남시험소(소장 려경구)’가 설립됐다. 1952년 과학원이 조직될 때 그 이름이 ‘화학연구소’로 전환되었다. 1961년 과학원 산하 화학연구소와 중앙분석소가 합흥으로 이전하면서 과학원 함흥분원이 생겨났다.

북한은 1961년 5월 1일 함흥과 흥남의 중간지점에 ‘2.8비날론공장’을 완공하여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면서 함흥-흥남을 대규모 화학공업기지로 만들고자 했다. 아직 흥남의 공급체계가 잘 확립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후 인구 증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도시를 합하여 흥남은 생산을 위한 도시로, 함흥은 행정의 도시로 만드는 것

해양도시

이었다. 그리하여 한 개의 대도시를 만들어 모든 힘을 집중하여 대규모 화학 산업기지를 조성하려 했다. 작은 도시를 지향하는 북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볼 때 대도시 육성은 이례적이다.

리승기 박사의 ‘비날론 섬유’를 시작으로, 려경구의 염화비닐, 마형옥의 갈 섬유, 한홍식의 무연탄가스화, 리재업의 합성고무 등 북한의 경제에 기여하는 성과들이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석유화학산업으로 발전하는 세계적 추세에 합류하지 못하고 석탄화학산업체계를 만들었다.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과 석회석을 통해 카바이드를 생산하고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자립적 경제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로써 함흥-흥남은 화학 산업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건설함으로써 대규모 화학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함흥시의 지방공장은 성천강 구역, 사포 구역, 회상 구역과 동흥산 일부 구역에 배치되었다. 지방공장에는 구역 안의 생산협동조합부터 중소규모의 기업까지 위치해 있다. 가까운 거리에 직장단위와 경공업 단위 공장을 배치해 물자의 이동에 따른 불필요한 거리와 교통량을 줄이려 했다. 함흥시 안에는 협동농장을 만들어 도시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세웠다.

1984년에는 대극장(총 부지 면적 11만㎡)이 완공되었다. 당시에는 북한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극장이었다. 대극장의 정면에서 우측으로 함흥인민경기장(3만 5,000석, 1981년)과 기념탑, 공원이 건설되었다. 광장을 중심으로 중심부를 형성하고 기념탑과 건축물로 채우면서 사회주의적 도시를 형성했다.

함흥-흥남에는 2·8비날론 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대상설비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와 식료, 피복, 방직, 일용품 공장이 밀집해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숨죽은 도시’로 변해 마약 생산지로 물류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3. 화학 기술과 함흥의 현황

대규모 화학 산업단지의 전성기를 거친 함흥-흥남은 침체기를 거쳐 2000년대부터 도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2·8비날론공장과 흥남비료

해양도시

공장, 용성기계공장은 CNC(컴퓨터 수치제어기) 현대적 기계설비로 개·보수가 진행되었다. 공장이 가동을 멈춘 지 17년만인 2010년 2.8비날론공장은 작은 규모의 생산을 시작했다.

북한은 2016년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할 것을 선언하고, 촉매의 국산화, 석탄가스화를 강조했다. 탄소하나화학은 탄소하나(C1)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원소를 더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석탄가스화기술로 메탄올을 얻고 기존의 석유에서 생산되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최근 탄소하나화학공업을 통한 공장의 정상 가동과 상품의 국산화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화학기술 연구기관은 함흥시 회상구역 정성동에 위치하며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에는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분석화학, 석유화학, 메타놀 연구소가 있다. 특히 탄소하나화학은 김정은 시기에 중요하게 강조되는 만큼 화학 산업이 밀집해있는 함흥-흥남지역이 부각된다.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함흥지구를 시찰하면서 대기업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2·8비날론 연합기업소를 돌아보고 생산실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김정은 시기,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주변에 수백 세대의 과학자 살림집이 준공되었다. 동흥산구역, 사포 구역이 새롭게 단장되었고,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오락시설이 늘어났다.

올해 2월에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지구에서 열린 대규모 온실농장 착공식에 김정은이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온실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함흥시에 공급될 예정이다. 바다와 육지를 통한 물류 이동에 적합한 교통과 항구가 있고, 화학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인적자원이 있는 함흥-흥남은 북한의 정치·경제사에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북한도시, 함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지상중계

2022 부산 평화공감 학술회의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모색

진 서 현

(KMI현장실습생,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2년 9월 30일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과 글로벌지식융합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 국립통일연구원과 KMI가 후원하는 ‘2022 부산 평화공감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최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남북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실익 확보와 통일 준비단계에서의 부산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협력 전문가, 통일·북한 전문가의 학술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하에 제1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남북 지역협력 방안’을 주제로 다뤄 남북이 화해 및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세션에서는 ‘남북 생태계 연결을 위한 새길 구상’ 주제를 통해 통일에 무관심한 미래 세대들이 한반도의 평화에 공감하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지식융합학회 윤경우 회장의 개회사와 국민대 통일교육사업단 여현철 단장의 환영사,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에는 나용우 연구위원, 허정필 겸임교수의 발표와 이기완 교수, 이우태 인도협력실장, 정대진 교수, 전병길 국장, 채수란 전문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3세션에서는 임철희 교수와 홍석훈 교수의 발표와 김현정 교수, 주민욱 연구위원, 문인철 연구위원, 이윤기 사무총장, 윤인주 연구위원, 서민규 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학술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전하고자 한다.

지상중계

Session 1: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남북 지역협력 방안

[발표 1] 남북 그린데탕트와 지속가능한 평화

나 용 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림 1> 남북 그린데탕트와 지속가능한 평화

- 윤석열 정부는 ‘실용’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북한의 비핵화 전진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제에는 ①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②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③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④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⑤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이익 실현을 강조하는 차별성을 보인다.
- 대북정책에서의 그린데탕트란 환경·생태 분야에서의 협력(비정치·비군사적 교류)이 정치·군사적 교류로 이어져 결국 긴장 완화로 확산하게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그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의미했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한반도 그린데탕트를 구상하여 제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 하에서 그린 개념이

지상중계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DMZ 국제평화지대화, 생명공동체 구상 등으로 표상되었다.

-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는 역대 정부 정책에서 이어져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미세먼지, 자연 재난 공동 대응 등 남북 환경협력의 틀 속에서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접경지역 그린 평화 지대화 도모를 제시하였다. 남북관계 정상화(과제 94)와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제 95) 간의 연계성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과제를 통합하는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현재 그린데탕트 구상의 내용은 추상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정책에서부터 구체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북한의 수요가 있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국제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화”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 재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유연한 대북 관여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북 교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DMZ 관할권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등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그린평화지대화의 핵심은 생태-환경-관광이라는 “그린 3축”으로, 그린평화지대화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리 접경에서부터 그린평화지대를 추진하고 그린평화지대화 추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그린데탕트와 관광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상중계

[발표 2]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과 과제

허 정 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그림 2>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방안 모색

-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확산했는데, 그 배경에는 접경지역의 발전에 대한 욕구, 지자체 주최 행사의 성공적 추진, 호혜적 이익 추구 등의 내적 동기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 활동의 필요성 등의 외적 동기가 있다. 이렇게 시작된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은 태동기(1999~2003), 확대기(2003~2008), 침체기(2008~2017), 재추진기(2018 초~2019 초)로 시기를 나눌 수 있다. 태동기에는 사업의 구체성 결여, 성급한 사업 추진, 북한의 수용 불가, 북한의 과도한 요구 등의 이유로 대부분 사업이 무산되었으며, 확대기에는 지자체별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되었으나, 2019년 제2차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단절되었다.
- 최근 남북교류 협력 환경이 변화하였다. 남한에서는 남북교류 및 남북관

지상중계

계 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 및 일부 개정하면서 남북교류 협력 환경이 발전했으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교시를 통해 입장의 변화를 밝혔으며 북한의 지역자립체계가 발전하였다. 또한,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동맹이 강화되었고, 북·중·러 연계도 강화되었다.

-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니즈는 미국의 대북정책 철회, 남한의 이중적 태도 철회, 대북지원이 아닌 남북협력이며, 남한의 방향은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승인 하의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관계 개선 이후 접경지역 중심의 신안보 협력 구축, NGO 단체를 활용한 지역 남북교류다. 지자체 남북교류는 초기에는 대북 지원, 중기에는 남북협력의 형태로 추진되었지만, 앞으로는 남북 상생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토론 1] 남북 그린데탕트와 지속가능한 평화

이 기 완

(국민대학교 교수)

- 동북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체제의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가 안보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만,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국제체제의 구조적 압력으로 그 외교적 자율성의 공간이 한층 더 협소해질 수 있는 경우, 향후 윤석열 정부가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남북관계는 비록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도외시한 대안은 국력의 손실만이 아니라 내부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상중계

[토론 2] 남북 그린데탕트와 지속가능한 평화**이 우 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

- 윤석열 정부의 그린데탕트는 기존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우선 지역적 한계성을 해결해야 한다. 왜 접경지역에서 그린데탕트 구상이 실현되어야 하는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있는 산림, 수질, 대기 문제 모두 굳이 접경지역에서 우선으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우리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와 접경지역에서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대립하는 이슈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 또한, 접경지역 관할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유엔이 가지고 있는 관할권 문제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토론 3]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방안 모색**정 대 진**

(한라대학교 교수)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서 지자체가 온전한 행위 주체로 인정받았지만, 아직 적극적인 실행사례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며,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의 참여 내지 협의가 가능하지만, 재정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상중계

- 특히 남북교류가 정체되고 경색된 국면에서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에서 통일교육과 평화연구 등 역량 강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영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마련은 반가운 일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중장기적 확대와 내실 강화는 물론 국내 평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과 형성을 위해서도 시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토론 4]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방안 모색

전 병 길

(통일과 나눔 국장)

- 남북관계 경색 및 대북 제재 하에 놓인 북한은 나름의 방식으로 외부와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국제기구 및 NGO와의 미팅은 적지 않은 횟수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UN SDGs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국가 발전과 결부시키는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 대외환경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남북교류를 대비한 북한에 대한 지식 함양, 대북 접근 전략 개발은 미래를 내다보면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다. 특히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자체에 적합한 다양한 대북 교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 과거의 원조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다자간의 협력의 틀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에 놓인 과제이다. 부산은 부산의 방법으로, 서울은 서울의 방법으로, 강원도는 강원도의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이슈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상중계

[토론 5] 남북 간 그린데탕트와 블루데탕트의 결합

채 수 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북한이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살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북극해빙이 4배 정도 빨라졌다. 북극해빙의 알베도 반사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해빙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힌다. 북한은 언제나 여름철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인데, 이것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 남북 간 그린데탕트와 블루데탕트를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전 남북 공동 기후변화 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과 한반도 어장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생태계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북한학계 전문가는 남북이 장기적 차원에서 이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북이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과 단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설립이 필요하다.
-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사용할 수 있으며, 접경 수역의 인명사고, 접경 수역 어선 구난구조 협조체계 수립, 접경 수역 남북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 등 접경 수역부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제1세션 토론

지상중계

Session 3: 남북 생태계 연결을 통한 '새길' 구상



<그림 4> 제3세션 발표 및 토론

[발표 1] 북한의 산림복원 현황과 과제

임 철 희

(국민대학교 교수)

- 북한의 산림 황폐화 분석 결과,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건강한 산림이 약 25~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산림 황폐화의 원인에는 식량부족, 경제성장의 부재 등이 있다. 북한 산림복원은 김정은 정권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며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재부라며 10년 안으로 벌거숭이 산들을 모두 수림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에 북한은 30년간 목재생산 위주의 산림경영으로부터 산림 생태 환경 보존 및 산림의 종합적 이용을 전환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산림계획인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을 세웠다. 1단계 사업에서는 묘목생산량 증대와 산림재해 관련 토대 구축을 계획하고 목재 의존도를 낮춰 산림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요 도로, 마을 주변과 평양 인근을 대상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단계 사업은 다목적 산림경영을 추구하며 주민거주지와 떨어진 곳을 포함한 전국토 및 전반적인 황폐지역에 산림조성을 계획했다.

지상중계

- 북한은 대대적인 산림복원 추진을 위해 최근 양묘장의 효율성 제고, 현대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복원을 위한 묘목의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체적인 묘목 생산능력을 갖춘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북 제재 하에서도 적극적인 산림복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협력으로 남북산림협력과 국제산림협력이 있었다. 남북산림협력에서는 양묘 공급 및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실제 양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실질적 성과가 부재하다.
- 2015년 FAO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임농복합경영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임농복합경영은 북한이 농경지 부족과 산림 황폐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경사지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을 함께 하도록 하는 토지관리체계를 의미한다. 2004년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에 의해 북한에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의 위험도 줄이면서 식량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개발도상국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산림복원 방안이다.
-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은 산림을 포함한 환경문제 해결을 국제민간기구(NGO)를 활용하여 협력을 진행했다. 한스자이델재단의 경우 2012년부터 산림 관련 사업을 준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조림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이후에도 북한 전문가의 산림 관련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북한 산림복원의 가치를 정량화하자면, 산림복원 시에 두드러지게 탄소 저장량이 증대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 영향이 상쇄되어 수자원 공급 및 홍수조절 효과가 있다. 생태계 서비스 관점에서도 높은 경제성을 지닌다. 산림복원은 한반도 그린데탕트의 주요 요소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한반도 협력의 요소이다.
- 북한 산림복원의 주요 과제는 2040년대까지 1980년대 수준으로의 복원이다. 현재 속도와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공조가 필요하다. 인도주의적 접근과 기후협력의 아젠다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상중계

- 또한, 북한 산림복원의 가치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MZ 세대의 관점을 고려하여 북한 산림복원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유익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에게 유익해야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 탄력이 가능하다.

[발표 2] 남북 접경지역 활용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DMZ의 평화적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홍 석 훈

(창원대학교 교수)

-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냉전 시기부터 있었다. 하지만 냉전 시기 DMZ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제안의 대부분은 비무장지대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냉전 시기 DMZ의 평화적 활용 구상들은 정치적 제안에 그쳤고 어떠한 실질적 추진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 한국 정부는 냉전 질서가 붕괴하자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사실상 종식되었다는 자신감에 기반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북측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 불거진 북한 핵 위기 등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
- 2000년대 남북교류 활성화 시기에 다시 DMZ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 남북 교통망 사업 등이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키워드는 평화, 생태, 환경, 지역개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DMZ 활용 성격을 보였다. DMZ를 관통하는 남북협력이 이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변화를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의 계기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 DMZ는 안보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한반도 갈등의 상징성과 분단의 특수성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남북의 군사적 완충지역을 만들고자 인위적으

지상중계

로 분리했던 DMZ는 생태, 환경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DMZ 지역의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려는 관심과 남북의 환경협력 가능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지난 남북 협력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DMZ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남북 접경지역의 특징이었던 단절된 공간에서 협력의 공간으로 그 인식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단절의 공간을 협력을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면 남북평화 공존의 시발점에서 국제적 평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남북평화체제의 마중물 역할로 작용할 것임을 기대해볼 수 있다.

- 과거 한국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DMZ 공동 활용방안’, ‘그린데탕트’ 등 글로벌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 보건 협력, 산림, 농·수자원 협력 등을 윤석열 정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으로 재추진한다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보편적인 피스 빌딩(peace building)을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남북한 당국과 시민사회 및 글로벌 NGOs와 국제기구의 연계를 통한 다자적 접근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트리플넥서스 논의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화 지속화 개념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평화개념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분쟁 중단 및 종식 등 군사적 차원에서의 안보 강화라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관련한 잠재적 갈등 요인 및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근원적 분쟁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 현시점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수립과 국민적 지지를 얻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남북문제의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 아젠다를 발굴하고 국가전략 아래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및 민간차원의 협력 모두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과거 경험에서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와 통일(통합)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장기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가 국민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대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즉,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아젠다의 원칙을 만들고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

지상중계

을 위해 거버넌스 중심의 민간 주도 방식이 필요하다. 미래 지향적 국가전략 기반 위에서 국민의 미래와 행복을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남북문제, 대외정책, 경제정책 등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토론 1] 북한 산림복원 현황과 과제

김 현 정

(동아대학교 교수)

- 북한 산림복원 현황과 과제 연구는 전 지구적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또한 남북한 비정치·비경제 부문 협력의 끈을 잇는다는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 북한의 산림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한국의 산림과 상당히 다른 수종과 형태를 구성하고 있을 텐데, 이에 관한 국내 연구가 상당 수준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에서 남북산림협력과 국제산림협력 등을 소개해 주었는데, 대부분 기간이 다소 경과한 사례들이라 최근에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 북한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2020년경에는 북한 외무성이 ‘외면할 수 없는 기후변화 문제’라는 글을 통해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행되고 있는지,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개도국이나 최빈국의 기후변화 이행 노력을 지원하는 녹색기금이 조성되어있는 바, 북한이 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상중계

[토론 2] 남북 녹색협력과 한반도 평화

주 민 옥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훼손과 질소 순환 임계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생태혁명에 대한 노력을 취해 나가야 하며, 기후재앙과 전염병 팬데믹 시대 범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측면에서도 환경문제는 주요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친환경 문제, 기후 위기 공동 대응, 신재생에너지 교류사업 등은 비정치적 이슈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추세다. 환경교류 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중장기적으로도 한반도 기후 위기 및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의 식량문제와 에너지자원 고갈에도 영향을 줘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 또한 이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자체 산림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향후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녹색 협력 강화는 물론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유엔 안보리를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 자세로 북한과의 그린데탕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선 북한의 산림 전반에 대한 사전 조사가 주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덧붙여 이를 남북협력 주요 아젠다로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낙후된 에너지 설비와 별도로 상대적으로 저비용, 운용 용이성, 유지보수의 경제성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미래 에너지 개발이라는 목표로 모인다면 상호 간 상생적 협력관계가 실현될 것이다.

지상중계

[토론 3] “남북 접경지역 활용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DMZ의 평화적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접경, 즉 경계는 실재적 경계 또는 물리적 경계와 비물리적 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영토와 지역적 경계와 같은 물리적인 경계는 사회문화적 경계와 같은 비물질적 경계를 발생시킨다. 경계는 기본적으로 자연 활동에 대비되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인위적 구분에 근거하여 경계는 해당 지역의 여타 사회적 활동과는 다른 시간적 흐름을 가진다. 이에 일반적으로 경계는 기존에 존재하는 공동체, 지역사회, 지역 생태, 지역 생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
- 경계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국제적 차원의 경계로는 국경과 이주민, 국경과 교역, 국경과 종족 갈등 등이 있다. 국경은 주요한 경계가 되고 일반적으로 경계의 오랜 시간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쉽게 소실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경이라는 경계 자체의 변화는 극히 드물고, 이를 넘나드는 ‘인간 집단’과 ‘활동’이 관건이다. 지역적 차원의 경계는 경계 구분에 따른 ‘공동체 와해’, ‘지역 개발과 국가 경제의 간극’, ‘지역개발에 따른 이주 현상’, ‘지역 간 경계에 따른 경제적 차이’, ‘지역 간 경계에 따른 환경문제’ 등이 있다. 지역적 맥락에서 설정되는 경계는 설립과 해소, 변경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지역적 맥락의 경계 문제는 경계 자체의 변화, 경계에 따른 인간 활동의 변화가 핵심이다.
-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경계가 남한과 북한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질서와 구조 형성에 기여했듯이, ‘경계의 무너짐’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질서와 구조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발표는 경계의 무너뜨림 혹은 경계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다만,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동의를 넘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상중계

[토론 4] 남북 접경지역 활용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토론문

이 윤 기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남북관계에는 딜레마가 있다. 북한 핵 문제 처리 과정과 남북한 경제적 교류협력의 발전이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핵심 이해관계를 변화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당위적 관점에서는 쉬운 문제이나 구체적 추진과정에서는 미국 또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난제이다.
- 생태협력을 중점적으로 시도한 접경지역 협력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이라는 규범적 원칙이 분쟁 확산을 막거나, 추가 분쟁 속에서도 지속되는 패턴을 보인다. 이해당사국 이외에 환경 관련 국제기구, 각종 환경단체가 협력사업을 주도하여 양자 간 이해 충돌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다수의 기금 출연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복수의 행위자가 개입하는 불가역적인 접경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
- 현시점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와 통일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장기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가 국민과 함께 고민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대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 거버넌스’가 필요하므로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아젠다의 원칙을 만들고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거버넌스 중심의 민간 주도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홍석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나 북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자국 국익주의로 나아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미래 지향적 국가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서 남북 접경지역을 잘 활용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문제가 우리 앞에 큰 장애로 남아있다.

지상중계

[토론 5] 남북 생태계 연결을 통한 '새길' 구상 토론

윤 인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북한 산림복원을 남북 및 국제협력의 공조로 인도주의와 기후협력 아젠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산림 황폐화의 원인과 문제 해결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임업성은 자원 보전을, 농업성과 건설건재공업성은 자원의 이용을 원한다. 이러한 대립을 조화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전 차원의 단순한 산림녹화가 아니라 탄소저장과 홍수조절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폭넓은 사업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 대북 관여에 있어서 현대식 양묘장 건설 관련 북한의 수요와 의중 파악이 필요하다. 최근 건설한 현대식 양묘장은 기존에 외부에서 생각하던 수준의 인도 지원, 개발 협력 단계라기보다는 보다 선진화된 대규모 시설이다. 기존의 한국 민간단체가 지원하던 수준의 소규모 시설보다는 자랑스러운 본보기가 될 만한 정부 차원의 통 큰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세로 보아서는 남북 양측의 신뢰가 낮아서 대규모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깨어진 신뢰만큼이나 양측의 기대치가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남북 접경은 육상 DMZ뿐만 아니라 접경수역(한강하구)과 NLL로 구성되어있다. 공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DMZ는 비무장 지대지만, 가장 무장된 초긴장 지역이며,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남북 공동 활용이 가능하고 NLL은 넘어갈 수 없지만 사실상 공유하는 바다이다.
- DMZ의 평화적 활용, 국제평화지대화 논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지역이 완충지대가 되기를 바라지만, 북한은 이 공간을 국제평화지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관건이다. 북한 입장에서 이 공간의 평화적 활용이 어떤 방식이 될지 구상해야 한다.

지상중계

[토론 6] 새로운 길, 새로운 시도

서 민 규

(통일부 과장)

- 이 모든 논의에 앞서 우리는 북한도 국가라고 볼 수 있는지, 북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북한 정부도 산림복원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민적 의무를 다해 나가고 있다. (...) 병해충예찰원들과 산림감독원들은 송충이동차단띠를 설치하고 담당구역들에 대한 전면조사를 진행한 데 기초하여 병해충구제사업을 간간히 하고 있다.”라며 산림보호 사업을 전개 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분석해봐야 할 사항이다.
- DMZ의 궁극적 한계는 북한의 동의와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통일신보에 따르면 북남신뢰조성에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비무장 지대 안에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할 데 관한 문제, 북남 협상을 통해 대폭적인 군축 합의 등의 내용이 예견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의 목표는 무엇일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北 리뷰

[서평]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권은민 저, 2022)

정 대 진

(한라대학교 교수)



저자가 주장하는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제 북한을 한 나라로 보자’라는 것이다. 남북한이 각기 다른 회원국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넘었고, 젊은 세대 다수는 이미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무슨 새로운 시선이나는 반문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현실’은 변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 법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제안한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해서 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다. 하지만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입각해보면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이기도 하다. 어느 때는 적대의 대상이고 어느 때는 협력의 대상이다. 북한에 대한 판단이 갈지자를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이유이다. 저자는 이런 법적 태도가 남북관계의 장래에 걸림돌이 된다면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총5장에 걸쳐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시간이라는 변수의 흐름에 따라 헌법이 제정된 1948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1991년, 그리고 2022년 현재 상황이 모두 바뀌었으므로 북한의 국가성 문제도 이제는 달

北 리뷰

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국내법을 개선하면 북한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제거하고, 대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제2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 주민을 남한 국적자로 보면 지금의 법적 판단은 편리하지만, 현실과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장래 남북교류의 폭이 확대되어 다수의 남북한 주민이 서로의 상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시대가 온다면 지금의 법적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한다.

굳이 미래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서평을 쓰는 필자가 보기에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관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중국적 내지는 복수국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된 1997년 1월 13일 당시에는 국적법이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었지만 같은 해 12월 13일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이 국내법 체계 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발생 중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경은 북한출생자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도 제3국 출생이라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이주배경청소년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모순이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보면서 북한출신주민들을 특수하게 규정하고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자녀라도 제3국에서 출생하면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다른 국가 출신으로 구분하는 일관성 없는 법적 현실이 전개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선’으로 법적 검토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北 리뷰

제3장은 남북한에서 벌어진 토지개혁과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담고 있다. 현재 남북한 토지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토지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흔히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개혁과정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혁과정이 단순하지 않았고, 개혁의 결과를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은 혁명적 과정을 거쳐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 세운 질서라고 보는 저자는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칙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라고 진단한다. 토지개혁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혁명 투쟁의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생명도 무수히 많았다. 이런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946년 3월 이전에 북한지역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그 이후에 수립된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제4장은 북한을 한 나라로 보자는 주장의 백미다.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라고 보는 특수관계론을 다시 들여다보는 제4장에서는 특수관계론이 지난 30년간 남북관계를 규율했지만, 미래에는 남북한 관계도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판례가 남북한 사이의 정치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법률이론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특수관계론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기존 이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5장은 남북합의서에 관한 연구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현재까지 50년간 남북이 합의한 258건의 합의서를 검토하고 남북 합의서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자는 저자의 주장을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지양’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분단을 고착화하자는 게 저자의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논

北 리뷰

의를 위해서는 기존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기존 논리에 포함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남북교류와 통일을 실천적으로 촉진하자는 주장으로 통한다.

필자도 ‘통일을 꼭 단일국가로 해야 하는가?’, ‘민족공동체는 반드시 국가 형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으로 종종 학술발표와 강연을 한 바 있다.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단일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이에 따라 짜여있는 통일교육 공식 담론에서는 금기시된 질문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질문을 들은 청중들은 비난과 부정 대신 대부분 긍정과 공감을 표시했다.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도 비슷한 반응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냉전이나 분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통일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선’을 주장하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목표를 향해가는 데 ‘새로운 시선’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로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알기

북한에도 도선사가 있나요?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1. 한국의 도선사

도선사는 선박의 입출항을 인도 및 안내해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외국 선박의 선장은 한국의 인천항, 부산항, 목포항, 울산항 등지에 입항할 시 국내 항구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므로 한국의 도선사는 외국선박에 승선해 예인선(tug boat)과 협동해 외국선박의 접안작업을 돕는다. 도선사는 통상적으로 작은 보트를 타고 2시간~2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외국 배에 줄사다리를 타고 승선해(사진 참조) 외국 선장에게 국내 항구의 특징을 설명해주며 예인을 유도한다. 한국의 도선사는 2022년 기준, 전국 12개 도선구에 25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그림 1> 핀란드 북서부 하일루오토섬의 한 배에 도선사가 승선하는 모습



출처: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47264>

한국의 도선사는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8:1의 경쟁률에 이르는 ‘도선사 시험’을 통해 매년 20여 명 정도가 선발된다. 도선사가 갖춰야 할 능력으로는 대형선박 선장 경험은 물론 유창한 영어 실력도 요구된다.²²⁾ 도선을 위해 각국의 선장과 유창하게 대화해야 하므로 영어가 수준급이어야 한다.

보통 선장이 되기까지 3등 항해사(2년), 2등 항해사(2~3년), 1등 항해사

북한 알기

(5~10년)를 거쳐야 하므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선장이 되고, 또 도선사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40대 중후반 이 되어서야 도선사가 될 수 있다.²³⁾ 국내에서 도선사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 이상, 월평균 1,100만 원~1,500만 원 정도의 고액으로 알려져 있다.²⁴⁾

한국은 물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항에 선박이 들어올 때 반드시 도선사가 탑승하여 배가 입항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관례에 따라 1961년 도선법을 제정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국내 도선사를 관리하고 있다.

2. 북한의 도선사

그렇다면 북한에도 도선사가 존재할까? 정답은 “yes”이다.

북한의 도선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수송과 무역, 해운산업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수송은 대부분 철도에 의존하는 주철종도(柱鐵從道)의 형태로 철도운송 90.7%, 도로운송 6.1%, 해상운송 3.2% 정도이다. 이처럼 북한의 해상운송은 철도의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형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은 3,000km의 긴 해안선이 있으나 분단으로 인해 동·서해안이 분리되어있는 형편이다. 또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무역은 중국과의 육상운송에 집중하고 있어 해운 항만의 발달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로 인한 해상운송 비중의 축소 등 북한 해운산업의 발전이 더디긴 하나, 외국과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남포항, 원산항, 흥남항, 나진항 등 주요 9개 무역항이 존재한다.

북한은 항만을 국가기간시설이자 군사용 도로 활용하고 있어 이 분야의 정보 수집이 쉽지 않다. 다만 2015, 2017, 2019년 나진-선봉 프로젝트로 북한 나진항을 세 차례 방문했던 KMI 이성우 선임연구위원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도 국제규정에 맞춰 무역항인 나진항에 도선사를 두고 북한 항구의 사정을 잘 모르는 한국 배나 외국 배의 입출항을 돕고 있다. 북한의 무역항에 도선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몇 명 정도의 도선사가

북한 알기

있는지 현재 알려진 바는 없다.

북한에서 도선사는 ‘배길안내사’, 예선사는 ‘보조배길안내사’ 라는 이름으로 법규에 지칭되어 있다. 북한에는 도선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선원법, 항만법, 해운법, 항무감독법에 몇몇 조항으로 도선사에 대해 포괄하고 있어 북한에 도선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1978년부터 국제규정을 수용해 도선사 규정을 두고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용 교재에 나타난 항사업감독에 관한 규정(1978.9.15. 제정) 2장 제10조에는 “항에 들어오거나 항에 나가는 배들은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배는 배길안내없이 항에 나들 수 있다.”라고 규정해 한국보다 17년 늦게 도선사 의무조항에 대해 명시하였다. 이후 1980년 해운법, 1986년 항만법이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끝에 현재의 법에 이른다. 도선사에 대해서는 여러 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선사에 관해 규정한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해운법 제64조 [배길안내]에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배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안내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선사가 탑승하여 입항을 돕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배길안내사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동법 제65조 [배길안내를 받는 선장의 의무와 책임]에서 “배길안내를 받을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배길안내를 도선사가 하더라도 선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책임 규정을 지고 있다. 또 제66조 [배끌기작업]는 “배끌기작업은 배를 부두에 대거나 부두에서 땔 때를 비롯한 필요한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예인선의 역할이 의무는 아니나 입출항 시 필요할 때 예인선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만법 제53조 [배길안내] “무역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대기지점으로부터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운법과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밖에 선원법 33조에는 도선사와 예인사에 대해 배길안내사 1급, 배길안내사 2급, 보조배길안내사 이렇게 3가지 급수로 구분하고 있다. 도선사는 두 개 급수로 나누어 1급과 2급이 존재하며 예선사는 보조배길안내사로

북한 알기

급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북한의 해운·항만 법제는 일찍부터 국제 규범을 받아들여 도선사를 두고 있으나 경제 여건상 해운·항만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현재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해 자력갱생을 외치며 근근이 버티고 있으나 차후 중국,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통해 해외투자를 늘리고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문호가 열리면 북한의 도선사도 한국처럼 고액연봉의 전문직이 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 북한 무역항에 도선사들이 약동할 날을 꿈꾸며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그림 2> 인천항에서 도선 작업을 하는 한국 도선사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7/515428/>

- 21) 한국도선사협회, “부산항 한기철 도선사 인터뷰”, https://www.kmpilot.or.kr/bbs/board.php?bo_table=photo_news&wr_id=54&page=6
- 22) 해사신문, “2022년도 도선사 수습생 22명 최종 합격자 발표”, <http://www.haesa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26>
- 23) 매거진 한경, “매년 연봉·만족도 1위 직업으로 꼽히는 이유”,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11082575d>
- 24) 머니투데이, “억대 연봉 도선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410182861390>

北 소식

북한 해양·수산 기사 (2022년 7월~9월)

진 희 권

(부산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2022년 7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메아리	7월 4일	양어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적극화	-‘순천메기공장’에서 먹이첨가제 생산공정을 확립 하였으며, 새 품종의 메기 육종사업에서도 성과 -‘청년두단종어사업소’에서는 뽕물등에 서식장의 능력을 확장하고 사료분쇄기를 제작 -‘서흥범안양어사업소’는 사료를 절약하면서 소화 흡수율도 높일 수 있는 토착 미생물에 의한 발효 먹이 생산 확대
노동 신문	7월 7일	장자산종합식료 공장에 다시마가공품생 산공정 확립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을 최종대 정책으로, 최고의 숙원으로 내세우는 당의 뜻을 받들어 자강도에서 다시마가공품생산공정을 확립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의 건물을 개보수하고 설비를 제작·설치해 세척과 압착, 절단, 건조, 제분이 흐름식으로 진행되는 생산공정 확립 -계절과 관계없이 도 내 탁아소, 유치원에 다시마 가루와 빵, 과자, 단묵 등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다시마 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노동 신문	7월 10일	청동기시대유적 새로 발굴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라선시 민속박물관을 비롯해 민족유산보호 부문 간부들과 연구사들이 라선시 라진구역 해양동의 초도에서 조선 사람의 형성과정과 청동기시대 문화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역사유적을 발굴 -유적은 청동기시대 무덤으로 장방형의 구덩이에 나무관을 묻어놓은 것으로 두 명 분의 사람 뼈와 20여 점의 유물 발굴 -사람 뼈는 머리뼈 봉합 상태와 관절 부위의 특징으

北 소식

			로 보아 20~30살 남성과 여성으로 추정되며, 조선에서 신인단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사람의 고유한 특징이 신석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을 거쳐 청동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으로 이어져 내려온 과정을 잘 보여줌 -머리뼈의 형태는 남자는 단두형, 여자는 단두형에 가까운 중두형이며 이마가 아주 곧고 얼굴 뼈가 중간얼굴형이며 코마루가 낮고 중간코형에 속함. 눈확은 높은눈확형으로 입천장이 아주 넓은데, 이는 청동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에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 -곰배괭이, 도끼, 자귀, 활촉, 창끝, 찌르개살과 같이 잘 다듬고 정교하게 갈아 만든 석기와 붉은 간그릇 등도 발굴
노동신문	7월 14일	태천호에 수만마리의 새끼쏘가리 방류	-‘태천군쏘가리종어사업소’에서 지난 7월 4일 새끼쏘가리 3만여 마리와 먹이용 새끼물고기 수십만 마리를 태천호에 방류 -‘태천군쏘가리종어사업소’는 실내종어장의 온도와 수질 보장을 위한 공사를 완료, 새끼쏘가리와 먹이용 물고기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였음
노동신문	7월 14일	논판양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전습회 진행	-평안남도 평원군 덕체리에서 논판양어를 발전시켜 알곡과 물고기 생산을 다같이 늘려 인민 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자는 목적으로 기술전습회 진행
내나라	7월 14일	간장늪	-간장늪은 량강도 백암군 ‘산양로동자지구’ 남서쪽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 -해발 1,740m의 평탄한 백두용암지대 남단에 놓여있어 전형적인 높은 지대의 진펄 -간장늪은 주변보다 지형상 낮은 곳에 있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고여서 생성 -늪의 물에는 부식산이 포함되어 있어 계절별로 물색이 변화하며, 가을에는 물이 맑지만 봄과 여름에는 간장빛으로 보인다 하여 간장늪이라 부름

北 소식

			-간장늪의 평균깊이는 2m, 제일 깊은 곳은 7m이며 전형적인 높은 지대의 진펄늪으로 ‘부채붓꽃’과 ‘끈끈이주걱’이 자라는 유일한 지대로 학술연구에서 의의가 큼
노동신문	7월 15일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자	-사회주의 건설 심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현존 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확대 강조 -김정은 총비서는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너지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과 강·하천이 많아 조수력과 풍력 등 자연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함 -현재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에서 성과가 있지만, 당이 바라는 수준에 비춰볼 때 시작에 불과하며, 다양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보다 능력이 크고 효율이 높은 풍력발전 설비와 태양빛전지판을 개발해야 하며, 조수력발전소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조선의 오늘	7월 20일	100억마리의 어린고기, 수백만마리의 새끼물고기 방류	-전국의 양어단위들에서 올해 들어 100억 마리의 어린고기와 수백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강과 호수 등에 방류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에서는 새끼쏘가리와 먹이용 물고기를 연풍호에 방류 -‘순천시종어사업소’, ‘숙천군종어사업소’에는 뽕물등애식장을 꾸리고 효율적인 배합먹이생산 방법을 도입해 룡정어, 잉어, 붕어 등의 새끼물고기를 강과 저수지에 방류 -‘신원군종어사업소’, ‘웅진군종어사업소’, ‘벽성군종어사업소’ 등에서도 물고기 방류 계획을 넘쳐 수행

北 소식

통일의 소리	7월 22일	황해남도에서 중요대상 건설에 박차	-중요 대상 중 '강령바다양어사업소'의 종어장도 포함, 현재 내외부 미장을 끝내고 바닷물저장탱크와 양수장 건설, 사무청사 개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노동 신문	7월 25일	산골군에 약동하는 새생활창조의 기풍	-자강도 시중군은 1,000m 이상의 산지가 적지 않은 고산지대지만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와 양어장을 꾸리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창조 -시중군 종어사업소에서는 잉어, 초어, 쏘가리를 비롯한 수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키워 도 내 여러 시, 군에 보내주고 경험도 전수하고 있음 -'장자강호'의 그물우리양어장(가두리양어장)에서는 해마다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여 군 내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과 전쟁 노병, 영예 군인들에게 공급

<2022년 8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 신문	8월 1일	크지 않은 양어장과 실리	-평양시 력포구역에 위치한 '소신남새농장'에서는 양어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큰 덕을 보고 있음 -양어장에서는 잉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함께 큰단백풀도 키우고 있음. 큰단백풀은 양어장의 물을 정화하고 물고기들의 서식에도 유리한 환경을 보장해주며, 집짐승의 먹이 문제 해결에도 많은 보탬이 됨 -양어장은 종합축사의 집짐승 관리공들이 함께 관리하며, 집짐승 배설물을 이용하여 양어 먹이 문제에서 효과를 보고 있음 -결론적으로 양어와 축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적은 노력으로 실리를 얻고 있음
노동 신문	8월 5일	집체적 협의, 여기에 발전의 위력한 담보가	-최근 함경남도 신포시 신포수산사업소 초급당위 원회에서 대중을 당의 수산 정책 관철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北 소식

		있다	-먼바다로 나가는 선박에 '바닷물정제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당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수행해야 할 과업이었으나 10여 척의 선박에 '바닷물정제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과업. 하지만 집체적 협의를 통해 대중을 자각시켜 모든 선박에 '바닷물정제기'를 설치 -4호부두와 2호부두 개건 공사, 어구와 선박 수리, 물고기잡이 준비 및 내부 개건과 설비 현대화 등 많은 성과 창출
노동신문	8월 7일	인민들이 좋아한다	-평양 곳곳의 '금산포특산물상점'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며, 황해남도 은륜군 금산포지구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젓갈 가공품을 생산하는 보물고로 불리고 있음
노동신문	8월 8일	날바다우에 조국의 만년재부를 안아올리는 용감한 개척자들	-평안북도의 월도간석지 건설장에 장식공사 한창. 철산군 장송지구부터 월도를 거쳐 보산지구까지 쌓아 올린 수십 리 제방에 장식공사가 끝나면 수천 정보의 새 땅이 생김
조선중앙통신	8월 10일	각지에서 그물우리양어, 논판양어 활발히 전개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그물우리양어, 논판양어 면적이 지난해보다 1만여 m² 확대 -평양시에서는 그물우리양어장에 측정기구 및 시약들을 갖추어 놓아 양어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 시키면서 생태환경을 보호 -함경남도에서는 물고기 생육에 유리한 강과 저수지, 호수에 그물우리양어장을 대대적으로 설치
노동신문	8월 12일	여러모로 좋은 논판양어 방법을 도입하여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농장의 논판양어 성과 소개 -논에는 싸그쟁이(참물벼룩), 지렁이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물고기의 좋은 먹이. 따라서 물고기를 큰 노력 없이 기를 수 있으며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에도 좋음. -물고기들이 잡초들도 잘 먹어 김매기에 드는 노동력도 절약. 1정보의 논에 3,000마리 정도의 메기를 놓아 기르면 김을 매지 않아도 됨. 또한, 물

北 소식

			고기 배설물도 지력을 높여주는 질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됨
노동 신문	8월 14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조수력자원	-김정은 총비서,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너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너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해야”한다고 언급 -조선 서해안은 조석 현상이 심하고 미세기차가 커 세계적으로 조수력 자원이 풍부한 수역이며 조수력발전소 건설에 유리한 지형 -조선 서해는 육지 깊이 들어와 만 형태이며 태평양으로 넓게 열려 있어 밀물과 썰물이 다른 해안에 비해 매우 심함. 또한 해안선 굴곡이 심해 짧은 제방으로 넓은 저수지를 건설할 수 있어 조수력 개발에 유리 -또한, 물굽이 발달해 있어 조수력과 함께 조류발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노동 신문	8월 18일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양어를 과학화한다는 것은 양어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물고기 생산 전반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세운다는 의미 -양어를 집약화한다는 것은 단위 면적에 생산수단과 노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단위생산물당 노력과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물고기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양어과학 기술 발전.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종자 문제를 해결하고 알반이와 알깨우기를 과학적으로 하는 데 큰 힘을 넣으며 양어대상 어종을 다종화해야 함 -다음으로 자연먹이와 배합먹이, 먹이첨가제 등 물고기 먹이에 대한 연구와 양어설비를 현대화, 자동화해야 함

北 소식

			-양어못, 공장 등 물고기 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며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 양어의 전반적 공정을 감시 및 조정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물고기 생산량과 물량, 물원천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어 적지를 선정하며 물절약형양어체계를 세워야 하며 물 온도와 폐하, 산소량을 정확히 보장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제때 제거하여 집약화 수준을 높여야 함 -물고기 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병예찰 사업을 철저히 하여 물고기병 예방 및 치료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강하천과 호수, 저수지 오염을 막고 공업폐수 등의 유입을 막아야 함
노동신문	8월 18일	우리 나라에서의 양어전망	-수산성 양어부문 간부와 대담 -산과 강·하천, 호수와 저수지, 샘물 원천과 온천이 많고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갖가지 물고기를 계절에 구애 없이 기를 수 있음 -최근 몇 년간 더운물 원천이 있는 지역에 메기공장과 자랑공장을 건설하고 방대한 면적의 양어장을 신설 및 개보수하였음. 또한 수십만 m²의 그물 우리양어장을 건설했으며, 동물성단백질 먹이 생산토대가 강화되었음 -담수 양어 부문에서는 우량품종의 물고기 종자를 확보하고 먹이 단위를 대폭 낮추며 양어를 집약화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함. 또한, 자연 양어 수역을 확대하고 전문 양어단위들의 설비, 구조물을 정비, 보강하여 생산능력을 높여야 함 -바다 양어 부문에서는 가까운 몇 해안에 새끼물고기를 수억 마리 이상 방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동·서해안의 유리한 수역들에 바다

北 소식

			목장을 전개하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함
노동 신문	8월 18일	시험못들에 비낀 탐구자들의 금지	-수산성 수산연구원 중앙양어연구소 연구 활동 소개
노동 신문	8월 21일	김덕훈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료해	-김덕훈 내각총리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를 찾아 개건 현대화 정형을 총화하고 고기배 건조와 물고기 가공 능력 확장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노동 신문	8월 21일	절승을 자랑하는 칠보산	-칠보산은 웅장하고 독특한 산악미와 계곡미, 수 려하고 황홀한 수림미와 바다가 경치가 한데 어 울려 다른 명산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채로 운 자연 절경을 펼쳐 보이는 명산 중의 명산 -칠보산은 산릉, 골짜기, 바다에 따라 여러 특징적 인 풍경을 이루고 있으며, 그 특징별로 내칠보, 외 칠보, 해칠보로 나뉨
노동 신문	8월 22일	다시마가루생산 공정 새로 확립	-강원도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어린이들에게 다시마 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해 다시마가루 생산 공정 새로 구축
노동 신문	8월 25일	대동강변의 이채로운 풍경	-평양 대동강변의 낚시 여가 활동 소개
통일의 소리	8월 27일	양어장의 덕을 본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내 ‘명당오리공장’에서 양어장을 꾸려 메기, 기념어, 잉어, 붕어 등의 물 고기를 많이 생산해 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
노동 신문	8월 28일	조국의 바다에 승리의 항로만을 새겨가는 주체적 해군무력	-1949년 8월 28일, 김일성 주석이 ‘조선함대사령 부’를 찾아 ‘수상보안간부학교’ 건설을 지시한 날 을 기념하여 ‘해군절’ 지정
노동 신문	8월 29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생태환경문제	-유럽의 방송을 인용,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의 심각성을 지적

北 소식

<2022년 9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노동 신문	9월 1일	해안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들의 동원성과 실행성 철저히 담보	-동해안 시, 군에서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의 요구에 맞게 방역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진행 -강원도 고성군, 원산시에서는 해안지역에 대한 방역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 -관광지와 해수욕장 등에 위생선전사업과 함께 방역 규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기 위한 해설 사업을 공세적으로 진행 -수산 부문에서는 방역 의식과 위기의식 제고와 함께 모든 선박이 바다 출입 질서를 엄수하며 어로공, 양식공들이 방역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생활화, 습벽화 -김책시, 어랑군, 명천군에서는 해안과 그 주변에 방역학적 감시를 강화하면서 오물처리를 제정된 질서대로 이행해 사소한 전염병 전파 요소도 차단 -함경남도에서는 해안연선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 강화. 해안감시초소 성원들의 임무 수행 정형을 수시로 요해장악하고 주민들과 학생, 소년들이 이상한 물건, 물체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발견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사업체계를 확립
노동 신문	9월 3일	수백만마리의 새끼물고기를 방류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의 새끼물고기 방류 성과 소개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에서는 올해 수십만 마리의 새끼명태 방류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에서도 올해 40여만 마리의 태평양련어 새끼물고기를 길러 많은 양을 방류 -‘청진수산사업소’를 비롯한 다른 단위에서도 태

北 소식

			평양련어 방류를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새끼물고기 생산 실적을 높이고 있음 -‘련진수산사업소’, ‘청암바다련어사료보장수산사업소’ 등에서는 많은 새끼가재미를 방류
노동신문	9월 5일	특색있는 양어장들	-평양시 여러 단위에서 단위의 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방법들을 받아들여 양어 진행 -평양시 평천구역 미래동 ‘주일탁아소’에서는 옥상에 양어장을 건설. 탁아소 물놀이장에서 쓰고 버리던 물을 여과한 다음 양수기로 퍼 올려 메기, 룡정어(가죽잉어), 잉어 등을 양어 -‘문수물놀이장’은 야외 물놀이장 지하에 10여 개의 물탱크를 설치 메기, 붕어, 철갑상어 등을 양어 진행 -서성구역 종합식당 ‘서성추어탕집’에서는 건물 중심의 공지에 지붕을 치고 5개의 양어못을 건설하고 미꾸라지, 붕어, 잉어 등을 양어
노동신문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해양수산분야 수상 단위는 아래와 같음 -(2중3대혁명붉은기) ‘운하종어사업소’, ‘증산대성수산사업소’, ‘청진외국선원구락부’
노동신문	9월 14일	개척의 길에 새겨진 자욱	-‘원산수산대학’ 강좌장 박광혁과 연구집단에서 함경북도 ‘서호수산사업소’ 기술자들과 함께 불리한 바다 생태환경 조건에서도 엄치참성게로부터 받은 알을 새끼 성게로 키우는 기술을 확립
노동신문	9월 14일	사랑으로 지새우신 한밤	-2014년 1월, 김정은 총비서가 수산물 냉동고를 돌아보며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로원에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

北 소식

			급하는 데에 대한 당부를 전한 사연 소개 -김정은 총비서는 전날 밤을 꼬박 지새우며 전국의 원아들과 양로원 노인들에게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직접 계산까지 해가며 사색을 거듭했다고 함
내나라	9월 15일	비파단	-비파단은 라선시 라진구역 신해동에 위치한 섬으로 비파형단검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 -비파단은 중생대 단천암군의 흑운모화강암, 화강섬록암으로 노출된 바위섬이며 섬의 등마루는 42m 높이의 봉우리를 비롯해 4개의 봉우리가 연결 -비파단은 둘레가 4.3km이며,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배를 타지 않고도 차를 타거나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며 사철 푸른 소나무 등 바늘잎나무들과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물푸레나무 등 넓은잎 나무들이 어울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음 -비파단에는 비파호텔과 비파민속여관이 있으며, 유람선 형식의 상점과 식당이 잘 꾸려져 있음. 해수욕장, 보트장, 낚시터 등이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 물개섬이 있음
노동신문	9월 17일	자라양식장건설 힘있게 추진	-황해북도에서 금천군에 알깨우기실, 사료가공장, 야외못 등의 시설을 갖춘 자라양식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 공사가 계속되고 내외부 공사가 진행 중
노동신문	9월 18일	습지보호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습지를 보호하자면 습지를 비법적으로 개간하여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습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함 -습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이나 물고기, 물새와 같은 동식물을 비법적으로 채취하거나 사냥하는 현상을 없애야 함 -습지면적과 수위변동, 습지에서 자라는 동식물에 대한 조사와 감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변화 상태를 제때 파악하고 부정적인 변화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北 소식

			-습지에서 서식하는 물새와 물고기, 습지식물 등 생물다양성과 습지생태봉사기능에 대한 인식을 깊이 심어주어 습지보호를 대중적으로 진행해야 함 -최근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는 수십 개의 철새(습지)보호구와 바다새보호구에 대한 전면적인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 대상을 새롭게 확정 짓는 한편 보호구역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내나라	9월 24일	명승지 - 학사대	-학사대는 함경남도 리원군 학사대리의 바닷가에 위치 -기묘한 바위와 이기푸른 벼랑, 푸르싱싱 자라는 소나무가 검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어 해금강을 연상케 하는 명승지
노동신문	9월 25일	다시마 가공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할수 있는 토대 마련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당 중앙의 뜻을 따라 평안북도에서 ‘압록강종합식료공장’에 다시마가공품 생산공정을 새로 구축 -세척과 절단, 압착, 건조, 제분 공정 등이 흐름식으로 갖추어진 생산공정이 확립되어 다시마가루, 단줄임, 단목을 비롯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다시마 가공품을 도 내 탁아소, 유치원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노동신문	9월 27일	배무이에 계속 박차를	-수산성 10여 개 단위에서 연간 배무이(선박 건조) 계획 완수 -‘청진중앙동물원 사료보장수산사업소’, ‘신암수산사업소’,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리원수산사업소’, ‘단천수산사업소’ 등의 단위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
노동신문	9월 27일	바다먼 산촌의 양어자랑	-량강도 갑산군 ‘신정농장’ 양어장에서 잉어, 붕어, 조개 등을 키워 농장유치원은 물론 제대 군관, 영예 군인, 교원들에게 공급
노동	9월	수산자원	-수산업은 물론 강·하천, 저수지를 끼고 있는 모

北 소식

신문	27일	보호증식에 수산업발전의 전도가 달려있다 든 지역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음 -수산자원의 보호, 증식 실태에 맞게 물고기잡이를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조직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 특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재해성 이상기후로 수산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실은 수산 부문에서 제정된 규정과 질서대로 물고기를 잡아들일 것을 절박한 과제로 제기 -다음으로 바다의 생태환경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생태환경 보호 사업의 중요성을 항상 자각하고 오수정화 설비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을 비롯해 강과 호수, 바다의 오염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수산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감독통제기관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함. -우량품종의 물고기를 육종하는 것을 비롯하여 앞선 양어, 양식기술을 연구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함 -국가의 법질서를 제멋대로 어기고 강과 바다, 호수,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망탕 잡거나 어업활동이 금지된 곳과 금지된 시기에 물고기잡이를 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해야 함
----	-----	--

北 소식

NK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2022년 7월~9월)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7월 18일	Sailing in the dark: North Korean ship reappears after vanishing for 5 years	-2017년 7월 이후 사라졌던 북한의 3,800톤급 화물선 ‘대봉 1’호(IMO 8408193)가 5년 만에 남포항에 등장 -국제 해상 협약에 따르면 300톤 이상의 화물선은 충돌 방지 등을 위해 24시간 자신의 위치를 전송해야 함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 James Byrne은 ‘대봉 1’호가 위조된 AIS 정보로 운항했을 가능성을 의심
7월 26일	North Korea flexes foreign networks to acquire new cargo ship: Investigation	-미국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와 NKPro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약 5개월 전 중국 남동부에서 사라졌던 팔라우 국적의 ‘Tomi Haru (IMO 9054779)’호가 최근 북한 남포 인근에 출현 -NKPro의 Ship Tracker 자료에 따르면 ‘Tomi Haru’호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도 파나마 국적의 ‘Lucky Star 9’호로 남포, 김책 등 북한의 여러 도시를 운항 -영국 통신기업 ‘Inmarsat’의 자료에 따르면 ‘Tomi Haru’호의 IMO 번호는 북한 국적의 ‘Sahyangsan 1’호가 사용 중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신규 선박 획득을 금지하는 제재를 승인하였으나 최근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며 선박을 인수하고 있음
7월 27일	First stop, North Korea: Chinese ship makes apparent	-항해 이력이 없는 IMO 미등록 중국 화물선 ‘Lei Shan 5’호가 북한 수역에서 사라져, 북한의 인수 가능성 의심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maiden voyage to Nampho	-해양 데이터베이스 Marine Traffic 자료에 의하면 ‘Lei Shan 5’호는 7월 25일 중국 시다오(Shidao, 석도) 근방에서 남쪽으로 400마일 떨어진 타이창(Taicang)을 목적지로 출항. 하지만 ‘Lei Shan 5’호는 북한 남포항 방향으로 항로를 변경,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진입 이후 위치 정보 송신을 중단 -국제협약상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300톤 이상의 화물선은 IMO 번호를 획득하고 이를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에 포함해야 하지만 IMO 기록에서는 ‘Lei Shan 5’호를 찾을 수 없음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Lei Shan 5’호는 신규 선박으로 북한이 인수한 것으로 추정
8월 5일	North Korea's official oil imports hit zero in May amid COVID-19 outbreak	-유엔은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한 대외 무역 제한조치로 인해 지난 2분기 북한의 공식 석유 수입이 상당히 둔화했으며, 특히 5월은 공식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중국 정부는 6월 3,460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으나 5월에는 수출량이 없었다고 유엔에 보고. 올해 들어 북한에 석유 수출을 유엔에 보고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며,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올해 6월까지 44,200배럴의 정제유만 수입 -하지만 NKPro가 위성 이미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에도 최소 3척의 선박이 남포항 석유 터미널에 정박했으며, 악천후 등으로 인한 위성 이미지 제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석유 운송 선박은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음
9월 2일	Lightning strikes twice as Pyongyang	-NKPro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공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acquires 2nd ship via Busan: Investigation	동 조사에 의하면 올해 5월 부산항에서 남포항으로 향해했던 ‘An Hai 6’호는 중장비를 인도해 유엔제 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 또한, ‘An Hai 6’호는 9월 초 북한 국적의 ‘락원 1’호로 위치 정보를 전송 하기 시작 -공동조사 결과 ‘An Hai 6’호는 싱가포르와 마셜 제 도의 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큼 -공동 조사 결과 최근 ‘Anni’호 도 ‘An Hai 6’호와 유사한 방법으로 북한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 지난 8월 27일 ‘경성 3’호로 위치 정보 전송 한 사실 확인 -‘Anni’호의 직전 소유주는 2022년 4월 7일 마셜제 도에 설립된 ‘Wuzhou Shipping Co Ltd’였으며, ‘An Hai 6’호의 소유주였던 ‘Pearl Marine Shipping Co Ltd’ 또한 마셜제도에 위치. 두 선박 은 모두 폴리네시아의 작은 섬나라 니우에 국적으 로 북한에 도착
9월 14일	North Korea may be modifying cargo vessels to smuggle oil: UN report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익명의 회원국이 제공 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정제원유를 불법 운송하 기 위해 화물선의 밸러스트 탱크에 물 대신 원유를 채우고 선박 안정을 위해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부분의 화물선이 갖추고 있는 밸러스트 탱크는 바닷물을 채우거나 비우면서 배의 균형을 유지하 는 장치, 밸러스트 탱크에 바닷물 대신 석유를 채 울 경우, 필요시 탱크를 비울 수 없어 위험 -유엔 전문가패널을 역임한 해양 전문가 후루카와 카츠(Katsu Furukawa)는 이와 같은 관행이 사실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 확인될 경우, 환경과 선원 안전에 “재앙을 부르는 일”이라며, “공해나 항구 정박 중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선박들은 낡고 부식돼 결함 위험성이 높아 화재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 -익명의 해운 전문가는 화물선 밸러스트 탱크에 석유를 채우는 것은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석유로 밸러스트 탱크를 채운다면 선박이 손상되었을 때 석유가 유출된다”라며 위험성을 경고
9월 16일	North Korea scraps massive ‘motherships’ after using them to smuggle oil: Report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대만을 통해 원유를 불법 해상 환적한 이후 선박을 폐선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몽골국적의 ‘Xiang Shun(IMO 9153800)’호와 팔라우 국적의 ‘Hong Hu(IMO 9125293)’호가 대만의 타이중에서 원유를 실은 후 북한의 ‘Unica(IMO 8514306)’호, ‘New Knock(IMO 8513405)’호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 -두 선박은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대만 해협 내부 또는 근처에 머물렀으며, 일관되지 않는 위치 정보를 발신 -의심스러운 운항 이후 ‘Xiang Shun’호는 방글라데시, ‘Hong Hu’호는 인도에서 폐선 -UN 조사관은 두 선박이 서류상 서로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오슝에 본사를 둔 ‘You Young Ship’이라는 업체가 통제한다는 단서를 발견

北 소식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9월 22일	North Korean tankers skipping COVID quarantine to deliver oil: UN report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 유조선이 남포 외각에서 원유를 인도받은 후 남포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 -이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남포갑문 밖에서 최소 수 주 이상 격리 후 입항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 현상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제임스 번 (James Byrne)은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유조선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 -2018년의 경우, 미국은 7월에 이미 북한이 석유 수입 한도를 수백만 배럴 초과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음 -북한의 석유 수입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

북한 통계

2022년 7~9월 북한의 수산물 가격 동향

(단위: 북한 원화)

날짜 (2022년도)	낙지(오징어)				고등어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7. 10	18,000	20,000	17,500	17,300	18,600	20,000	18,000	18,100
7. 24	17,300	18,100	16,700	16,600	19,000	19,500	18,300	18,400
8. 7	15,300	16,000	14,700	14,600	18,500	18,300	17,200	17,300
8. 21	15,000	15,200	14,500	14,400	18,800	18,700	17,900	17,800
9. 5	14,300	14,620	14,000	14,000	18,000	18,200	17,700	17,600
9. 18	14,500	14,400	13,800	13,700	17,800	17,900	17,500	1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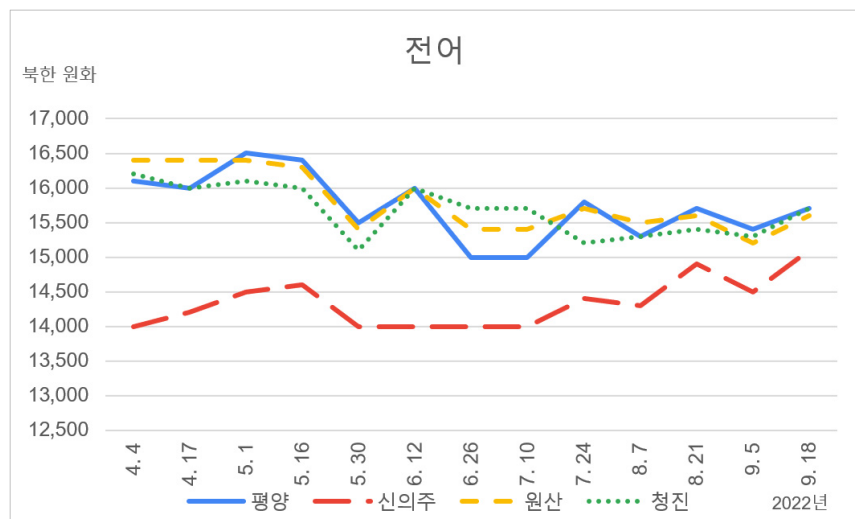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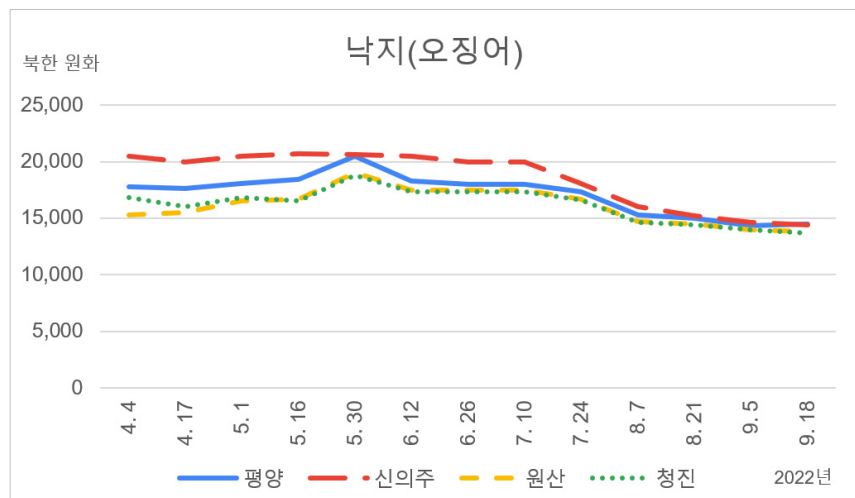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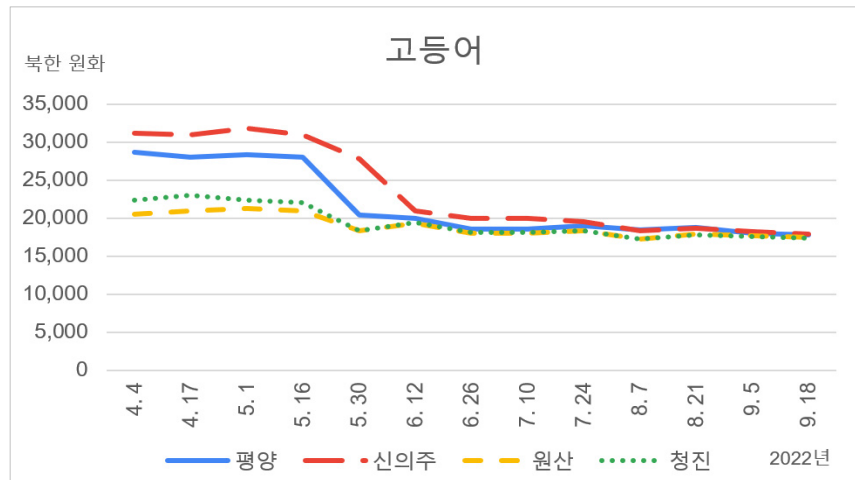
날짜 (2022년도)	꽂치				전어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7. 10	18,000	16,000	16,700	16,500	15,000	14,000	15,400	15,700
7. 24	18,000	16,000	16,400	16,500	15,800	14,400	15,700	15,200
8. 7	16,800	16,000	16,200	16,300	15,300	14,300	15,500	15,300
8. 21	16,800	16,200	16,300	16,300	15,700	14,900	15,600	15,400
9. 5	16,500	16,000	16,000	16,000	15,400	14,500	15,200	15,300
9. 18	16,000	15,800	15,400	15,500	15,700	15,100	15,600	15,700

날짜 (2022년도)	송어				바지락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7. 10	12,100	11,400	13,000	13,200	12,500	12,000	11,200	11,300
7. 24	12,300	11,600	13,000	13,200	12,500	12,000	11,300	11,400
8. 7	12,400	11,900	12,700	12,600	12,500	12,100	11,500	11,600
8. 21	12,800	12,100	12,900	12,700	12,800	12,400	11,900	11,800
9. 5	12,900	12,200	12,800	12,700	12,900	12,500	11,700	11,500
9. 18	13,200	12,900	13,400	13,500	13,000	12,900	12,300	1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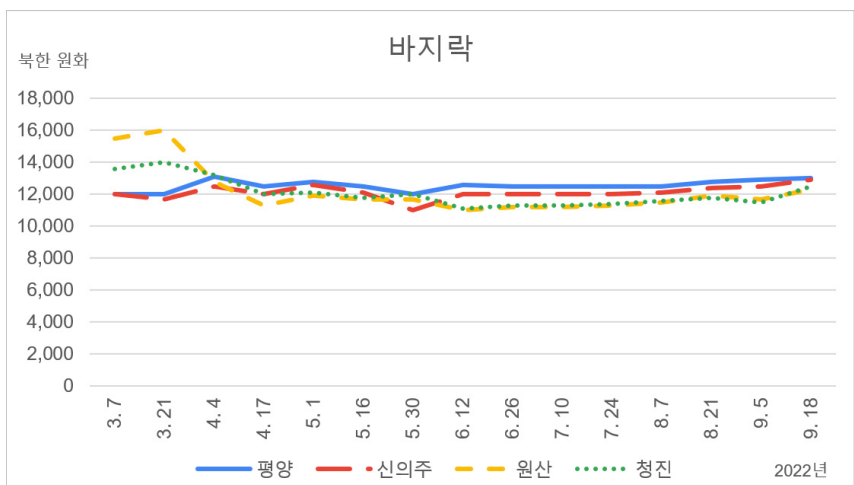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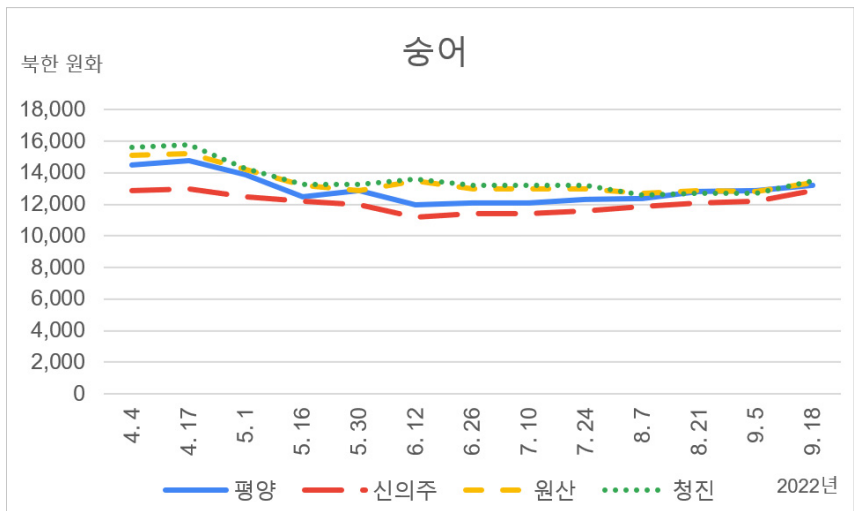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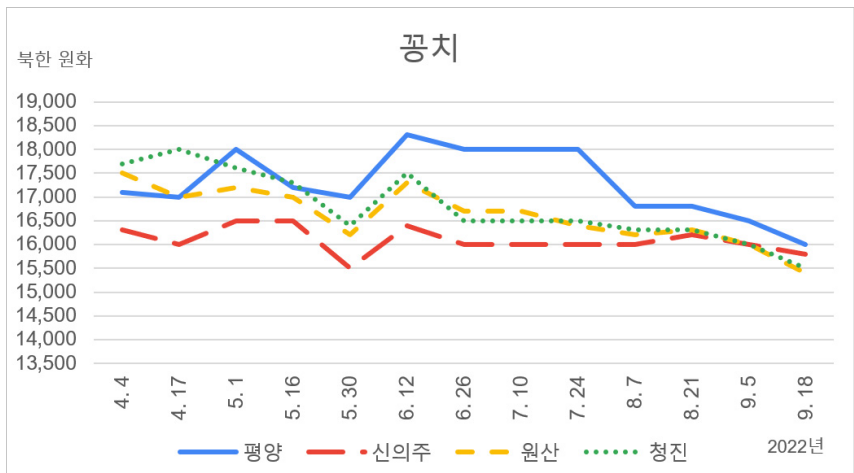
출처: 데일리 NK 자료제공

북한 통계

품목별 가격 추이



북한 통계



북한 통계

북한 주민 식생활 관련 수산물 공급·수요 동향

이 상 용

(데일리NK 공동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수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부터 수산사업소의 현장 지도를 하면서 이른바 ‘어로 전투’를 강조하고 있지만, 수년간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셀프 봉쇄’가 겹쳐 수산업도 타격을 받은 것이다.

김 위원장식(式) 시장화 중시 정책으로 수산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군(軍)이나 특수 단위(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소속 수산사업소와 돈주(錢主)들을 중심으로 생산량 증대가 이뤄졌다.

또한 써비차(사람과 물건을 싣는 화물차)가 활성화되면서 산골이나 농촌 등 예전에는 수산물을 접하기 힘들었던 지역에서도 돈만 있으면 물고기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1. 코로나 사태 이후 수산물 유통의 변화

코로나 사태로 상황은 달라졌다. 먼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바다에 출입하는 허가를 받는 절차가 훨씬 강화돼 공급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예전에는 ‘뒷돈(뇌물)’으로 누구든지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민반장은 물론이고 담당 보위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일반 주민은 물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다에 나갈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써비차는 언제 어디로든 수산물을 날라다 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었다.

물론 지금은 물품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

북한 통계

하면 이동 물량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량이나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이 아닌 수산물 유통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심화로 주민들의 수산물 수요도 급격히 떨어졌다.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루 3끼를 먹었던 주민은 하루 2끼로 식사량이 줄었고, 쌀과 옥수수를 7:3으로 섞어 먹던 주민은 거꾸로 옥수수와 쌀을 7:3의 비율로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수산물을 찾는 주민도 자연스럽게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매체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는 모습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 주민들은 이 같은 공급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2. 최근 수산물 공급의 실태

필자는 그동안 협력해왔던 북한 주민 4명과 직접 접촉해 최근 수산물 공급 실태를 조사했다.

<그림 1> 평안북도 압록강에서 물고기잡이 중인 북한 주민(2018년 촬영)



인터뷰에 응한 평양시 김 모 씨, 함경남도 신포시의 박 모 씨, 양강도 갑산군의 양 모 씨, 함경북도 회령시의 리 모 씨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수산물

북한 통계

이 식탁에 오르는 날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바닷가에 사는 박 씨는 “보름에 한 번”이라고 답했고, 평양시민인 김 씨도 “한두 달에 한 번”이라고 알려왔다. 산골과 일반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양 씨와 리 씨의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 “1년에 두세 번”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물고기를 잡지 못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라는 것이었다. 박 씨는 “어로공이나 선주(船主)도 고기 구경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당국의 해안 통제 때문에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열악한 수산업 환경이 공급량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리 씨는 바다로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죽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당국의 어획량 증대 강조에 경운기 수준의 엔진을 단 목선이 먼 바다에 나가는 일도 적지 않았고, 실제 일본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북한 목선이 자주 목격된 바 있다. 심지어 일본까지 떠내려 온 북한 목선과 시체가 계속해서 발견되는 참극도 벌어졌다.

수도 평양에서도 수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당국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씨는 “요새는 명절 공급이나 국가, 기관 공급이 있을 때나 수산물을 좀 먹어본다”고 말했다.

3. 북한식 양어·양식의 효과

“양어·양식, 일반 주민에겐 아직 ‘그림의 떡’, 내각 소속 기업소는 정상 운영 안 돼”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양어·양식이 주민들의 수산물 섭취에는 도움이 될까? 대체로 일반 주민들은 모두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직접적인 도움이나 와 닿는 혜택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평양에서조차 “당(黨), 정(政), 군 등 기본 국가기관에 대한 공급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명절날 공급이 전부”라고 한다.

북한 통계

현재 북한 당국은 제대로 된 식량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고난의 행군) 후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평양 핵심층 대상 공급이 2020년 3월부터 끊기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평양 외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더 많아졌고, 지방주민에게 중앙당의 ‘특별 선물’이 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당국은 양어·양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시스템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민군대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부족한 내각 소속 양어사업소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주민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박 씨는 상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미치지 못하는 수산물이 바닷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4. 수산물 유통 개선 필요성

“물고기 대량 공급 선전 대체로 안 믿어...유통 체계 복원, 시급히 이뤄져야”

대다수 주민은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여야 한다’는 선전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지금까지 평양시민을 제외한 지방주민을 위한 수산물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어·양식을 강조하지만, 주민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혜택은 적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이에 대해 “선전만 한 지 3대(代)째”라는 염세주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 증세로 앓으면서도 ‘수산물 한 토막만 먹어봤으면 눈이 툭 튀어나오겠다’라고 말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기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식량을 책임지겠다는’ 선전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인 상황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일단 수산물 유통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 씨는 “냉동 창고가 있는 큰

북한 통계

공장기업소에 물고기를 넣고는 그곳에서 도매로 받아다가 시장에서 팔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게 됐다. 이런 체계가 가장 먼저 다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씨도 수산물 가공과 운반, 냉동 전문 시설이 구비돼야 공급이든 판매든 잘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 이 글은 수산물 통계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인터뷰에 기반한 필자의 의견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